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20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외 11명 공동발의)
-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재개발·재건축지구(서울시 642개소)는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길고양이 포획의 어려움, 중성화수술 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길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 또한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유기되는 반려견 등은 들개화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 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지구 내에서 길고양이 및 동물유기 방지대책은 개발의 논리에 밀려 등한시되는 상황임.
- 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대

한 유기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이를 위한 이주매뉴얼 등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사전활동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을 위해 제24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지구(서울시 642개소)에 대하여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임.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는 시민의 정책참여와 정책공론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2월 19일 시민 신○○ 에 의하여 제안된 내용은 재건축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그간 건물잔해 등에 깔려 죽음을 맞게 되는 등 개발논리에 밀린 생명경시풍조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5,676건의 시민공감을 얻은 사항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¹⁾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임.

- 또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서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② (생략) <u><신설></u>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1)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⑤

3 집행부서 의견

-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찬성의 의견임.

도시정비구역은 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사업시행자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물보호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기관인 자치구, 시민 활동가, 동물보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도 필요함.

4 종합의견

-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정배경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또한 집행부의 찬성의견과 조례안의 내용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